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60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21가소9610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소매업체인 'C'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하기 한 달 전인 2019. 3. 30.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12. 20.경 원고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5.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3964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5,001,876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원고에게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30673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2021.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5,00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9. 3. 30.경 지급한 5,000,000원은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던 점, ② 피고는 선행사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935,556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2019. 3. 30.경 지급한 5,000,000원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 3. 30.경 이전에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돈이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달 전에 미리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5,001,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이민영, 판사 박정운